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3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의의	5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9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3
1. 제명, 목적 등	13
2. 조사대상의 범위	15
3. 위원회의 업무 등	18
4.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등	20
5. 위원회의 정원	25
6. 공무원 등의 파견	27
7.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등	29
8. 고발 및 수사요청,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32
9.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36
10. 벌칙, 과태료 등	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태임.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섰으나, 계엄 선포의 경위와 권력기관의 개입, 진실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 왜곡이나 은폐 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필수적인 과제임. 아울러 유사한 반헌법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임.

이에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조사기구로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조치 등으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11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라.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 마.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0조).
-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헌법적·반민주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제23조).

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자.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장).

차.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보자료의 형태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3조).

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한 사건이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경위, 배후, 관련 기관의 개입 여부 등 핵심적인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함.

이에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정안은 국가의 존립 기반인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헌정질서 회복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사건의 성격상 대통령, 군,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이 폭넓게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2025년 6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경우 조사대상과 내용이 중복되어 수사 및 조사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기구가 병행될 경우 상호 협력보다는 권한 충돌이나 대립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153억 5,000만원(연평균 76억 7,5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

1) 이는 위원회의 조직 규모를 진실화해위원회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등이 변경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건비	3,159	2,426	5,585	-
	기본경비	3,247	2,493	5,740	-
	사업비	2,085	1,601	3,686	-
	자산취득비	339	-	339	-
	합계	8,830	6,520	15,350	7,675

주: 본 추계는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직규모를 진화위 정원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원, 직급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국가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각 국가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된 권고사항의 이행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상황 점검·관리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소관 기관 외의 국가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해당 점검·관리 권한을 「정부조직법」상 중앙정부기관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동 제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것인바, 「계엄법」은 국방부 소관인 반면 행정안전부에는 계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 2건(2209595 민형배의원안, 2210249 윤종오의원안) 및 관련 청원(2200177호)이 이미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어 전체회의 상정 및 검토보고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제정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국방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²⁾

2) 현재 국방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지정되어 동 제정안이 9월 2일자로 회부되어 있음.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반헌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칙 47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조사 대상의 범위	
	제3조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	의사의 공개	
	제14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	직원의 신분보장	

구분	조문 내용		비고
	제1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	조사의 개시	
	제22조	조사의 방법	
	제23조	동행명령 등	
	제24조	청문회의 실시	
	제25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6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27조	증인 등의 선서	
	제28조	증인 등의 보호	
	제29조	검증	
	제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1조	진상규명결정	
	제32조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	위원 등의 보호	
	제35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36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7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8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9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0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1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42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의무	
	제43조	비밀준수 의무	
	제44조	자격사칭 금지	
	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벌칙	

구분	조문 내용		비고
	제47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조치 등으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함.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11명으로 하고,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넷째,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헌법적·반민주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

다섯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여섯째,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하부터는 조문별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등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조치 등으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되어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반헌법 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 등으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및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반헌법 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만, 본 위원회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 및 반민주적 행위와 관련된 사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3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제명과 위원회 명칭에 명시하여 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위한 특별법」 및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
별법」과 이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각각 ‘4·16세월호참사’, ‘10·29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법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위원회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입법례 》

제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원회 명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 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2. 조사 대상의 범위

제2조(조사 대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 시켜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한 사건
2.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사건
3.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집행과정에 무장한 군인들이 발포할 수 있도록 실탄을 동원하고 발포를 허용하며, 국회 기물을 파괴하고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을 상대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
5.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공무원, 시민사회 인사 등을 불법체포, 납치, 고문, 사살하려 하였으며 이들을 수감하기 위한 구금시설을 마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6. 군인과 민간인 신분의 전직 군인 등이 내란을 목적으로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지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7.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8.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 또는 행위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대상자의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를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국회 장악 시도, 국회의원의 표결·출입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사건과, 군인 등의 내란 목적 모의 참여,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 등 의혹 사건들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열거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에 관여한 행위나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병력 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관련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2조제2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위원회 의결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의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나, 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
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 등도 각 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위원회의 업무 등

제3조(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결과의 처리요구
4. 반헌법행위 재발방지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정안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수행 업무, 독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 3조).

이는 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본 위원회의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사건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위한 특별법」 및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위원회의 업무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원회 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10명(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6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⑦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

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36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활동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1명, 국회가 10명을 추천하되, 국회 추천인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6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3명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안 제5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최초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 지명 1명과 국회 추천 10명(교섭단체 6명, 비교섭단체 4명) 등 총 11명으로 한 것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17명,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9명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로 보이나,³⁾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

국회추천 위원 10명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 후 6명을 추천하도록 한 반면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도 3명 중 대통령이 추천한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과 함께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의 국회추천 위원 10명 중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위원회의 국회추천 위원 9명 중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 후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임.

《 위원회의 위원구성 관련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위원 구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회 10명, 대법원장 2 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 명, 유족대표 3명 국회추천 10명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 체 5명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전원 국회에서 추천 국회의장(각 교섭단체와 협의 후 추천) 1명, 대통 령 소속 교섭단체 4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대통령 1명, 국회 10명 국회추천 10명은 국회의 장(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 후 추천) 6명, 비교 섭단체 4명
	상임위원 5명 국회 2명(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 섭단체와 비교섭단체 1 명), 대법원장 1명, 대한 변호사협회장 1명, 유족 대표 1명	상임위원 3명 국회의장 1명, 대통령 소 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1명	상임위원 3명 대통령 1명, 국회의장(정 당의 교섭단체외 협의 후 추천) 1명, 비교섭단 체 1명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최초 1년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대상의 광범위함과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입법례 비교 》

구분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위원회 활동기간	- 최초 1년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최초 1년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최초 1년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5. 위원회의 정원

제14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다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가 조사위원회의 정원을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⁴⁾

제정안에 따라 구성될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발생한 사건들의 광범위성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때 본 위원회의 정원을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와 동일하게 60명 이내로 하려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유사 위원회 직원의 정원 수 비교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직원의 정원 수	120명 이내	60명 이내	60명 이내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6. 공무원 등의 파견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요청 및 파견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

다만, 안 제20조제4항에서 파견 공무원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려는데, 일반행정·예산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청·검찰청·국방부·국정원 등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서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공무원의 수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제5항이 파견 공무원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⁵⁾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는 이와 같은 파견 공무원 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7.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등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안 제30조),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의 경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반면,⁶⁾ 「10·29이

6)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정안에 따라 구성될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인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사당 장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북한의 무력충돌 유도·야기 의혹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31조의 진상규명결정, 안 제32조의 진상규명불능결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⁷⁾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이 다수의 진상규명 필요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경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이후 발생한 사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조사 결과는 안 제36조의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통해 정리되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는바, 진상규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7조(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명결정 및 불능결정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도 진상규명결정 및 불능결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고발 및 수사요청,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37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사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발 또는 수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9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36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6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 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요청(안 제37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38조)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조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에서 각 기관에 권고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9조).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규정의 경우 사건 관련자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처벌·징계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⁸⁾

- 8)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제39조가 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된 각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관리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소관으로 할 뿐,⁹⁾ 그 외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9)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질적인 관리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해당 점검·관리 권한을 「정부조직법」상 중앙정부기관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9.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제41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 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1조), 위원회와 특별검사 간 업무협조 의무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는 이른바 ‘상설특검’으로, 국회에서 개별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하는 ‘일반특검’과 구분됨.

《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비교 》

구분	상설 특검	일반 특검
법적근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제정)	개별 특검법
도입절차	국회에서 수사 요구안 통과 시 자동 가동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 제정
임명방식	특검추천위 후보 추천, 대통령 임명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절차
대표사례	세월호 참사 특검(2021)	국정농단 특검(2016), 드루킹 특검(2018) 등

※ 국방위원회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9595호)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안 제41조는 위원회가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설특검을 구성하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사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¹¹⁾

1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전의 심사를 요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

2025년 6월 공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¹²⁾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임.

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 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12) 2025.6.5. 국회의결, 2025.6.10. 공포

10. 벌칙, 과태료 등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3. 제44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2.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직원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안 제46조)과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안 제4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한 참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바, 해당 조항이 참고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참고인을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가 거짓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으나, 참고인을 명시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문 의 처
02)6788-5343

1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거짓으로 회신한 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